

국회도서관정보공개심의회내규

2006.10.2 국회도서관내규 제207호 전문개정
개정 2007.1.31 국회도서관내규 제210호
(타)개정 2009.6.19 국회도서관내규 제236호(국회도서관 직제 전부개정에 따른
국회도서관간행물편집위원회내규 등의 정비에 관한 내규)
개정 2011.9.26 국회도서관내규 제256호
개정 2018.3.8 국회도서관내규 제312호
개정 2019.3.7 국회도서관내규 제319호
개정 2021.11.30 국회도서관내규 제337호
개정 2021.12.21 국회도서관내규 제340호
개정 2022.9.30 국회도서관내규 제34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도서관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회도서관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6.19, 2021.12.21>

② 위원장은 의회정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기록보존소장과 국회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회도서관장이 위촉하는 5명으로 한다.<개정 2007.1.31, 2009.6.19, 2011.9.26, 2018.3.8, 2021.11.30, 2021.12.21>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6.19, 2018.3.8, 2019.3.7, 2021.12.21>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의견서의 작성, 그 밖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료 및 의견요청)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서) ①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며 이 의견서에는 정보공개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 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9.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9.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9.30>

제7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207호,2006.10.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07.1.31>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회도서관직제 전부개정에 따른 국회도서관간행물편집위원회내규 등의 정비에 관한 내규) <제236호,2009.6.19>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1.9.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8.3.8>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9.3.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21.11.30>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12.21>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22.9.30>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